

사고보험금 청구서류 안내 (고객안내용)



구분		구비서류	세부내용												
공통		보험금청구서(수익자 계좌번호 기재) 개인(신용)정보처리동의서 청구인 *신분증(내방시) *신분증종류: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등 ※ 모바일, 홈페이지, FAX 등 사본접수 가능대상 - 청구금액 1,000만원 이하 (실손은 금액제한 없음) - 단, 장해/진단은 피보험자 = 상해시 수익자 계약 사망은 사망시 수익자 지정계약에 한함	(상황별) 추가서류 <table><tr><td>미성년자 혹은 종피보험자</td><td>가족관계확인서류(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td></tr><tr><td>대리인 청구시</td><td>위임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td></tr><tr><td>재해사고시</td><td>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자동차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교통사고 이외 재해사고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3. 확인서류발급불가시: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td></tr></table>		미성년자 혹은 종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서류(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해사고시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자동차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교통사고 이외 재해사고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3. 확인서류발급불가시: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미성년자 혹은 종피보험자	가족관계확인서류(배우자·자녀 등의 보장상품, 수익자가 미성년자인 경우 등) 예) 기본증명서,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관계증명서(상세), 주민등록등본 등													
대리인 청구시	위임장 및 보험금청구권자의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재해사고시	1. 교통사고: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자동차보험사 교통사고사실 확인원 2. 교통사고 이외 재해사고 - 산업재해: 산업재해처리내역서 또는 보험급여지급확인서 - 군인재해사고: 공무상병인증서 - 의료사고 등 법원분쟁: 법원판결문 - 기타: 공공기관(경찰서, 소방서 등) 사고사실확인서 3. 확인서류발급불가시: 사고내용이 기재된 진료차트 등														
사망	사망진단서(또는 시체검안서) ※ 사본제출시 원본대조필 날인 ※ 상기의 기본증명서 또는 말소자등본 원본 첨부필요(사망사실기재)	(사망 수익자 미지정시) 추가서류 <table><tr><td>상속관계 확인서류</td><td>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td></tr><tr><td>상속인이 다수인 경우</td><td>위임한 상속인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td></tr><tr><td>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td><td>미성년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td></tr></table>		상속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위임한 상속인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상속관계 확인서류	가족관계증명서(상세), 혼인증명서(상세), 제적등본 등														
상속인이 다수인 경우	위임한 상속인 각각 위임장 및 인감증명서(또는 본인서명사실확인서)														
사망수익자가 미성년자	미성년자기준의 기본증명서(상세), 가족관계증명서(일반)														
장해	후유장애진단서 ※ 가입한 계약의 장해분류표에 따라 구비서류가 달라질 수 있음	(장해부위별) 추가서류 <table><tr><td>팔·다리관절</td><td>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td></tr><tr><td>척추장해</td><td>'05.4.1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애 진단서 제출</td></tr></table> 일반진단서로 청구 가능한 장해 <table><tr><td>만성신부전</td><td>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연구투석)기재</td><td>사지절단</td><td>수술명(절단부위명시)</td></tr><tr><td>인공관절치환</td><td>치환일자, 부위 기재</td><td>신장, 비장 적출시</td><td>적출일자, 부위 기재</td></tr></table>		팔·다리관절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척추장해	'05.4.1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애 진단서 제출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연구투석)기재	사지절단	수술명(절단부위명시)	인공관절치환	치환일자, 부위 기재	신장, 비장 적출시	적출일자, 부위 기재
		팔·다리관절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척추장해	'05.4.1일 이전: AMA 방식의 운동각도(정상운동각도 포함)기재 '05.4.1일 이후: 추체간 유합술 또는 고정술 시행 부위 기재 ※ '99.2.1일 이후 추간판탈출증 장해는 후유증상이 명시된 후유장애 진단서 제출														
만성신부전	최초 혈액투석일, 환자상태(연구투석)기재	사지절단	수술명(절단부위명시)												
인공관절치환	치환일자, 부위 기재	신장, 비장 적출시	적출일자, 부위 기재												
입원	진단서, 입퇴원확인서(진단명, 일자 기재)	입원원의 경우 필수불가결한 입원 또는 암치료를 직접 목적으로 한 입원으로 확인되는 서류 <table><tr><td>입원간병인사용특약</td><td colspan="3">'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료비세부내역서' 간병인사용: ① 사용확인서(회사확인) ② 카드전표/현금영수증 ③ 간병인소속회사사업자등록증</td></tr></table>		입원간병인사용특약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료비세부내역서' 간병인사용: ① 사용확인서(회사확인) ② 카드전표/현금영수증 ③ 간병인소속회사사업자등록증										
입원간병인사용특약	'입원간호·간병통합서비스: 진료비세부내역서' 간병인사용: ① 사용확인서(회사확인) ② 카드전표/현금영수증 ③ 간병인소속회사사업자등록증														
수술	진단서, 수술확인서	※ 신수술보장특약N: 진료비계산서, 급여수가코드(EDI포함) 명시된 진료비세부내역서 (회사양식의 급여수가코드(EDI 코드 포함) 확인서로 대체 가능)													
골절 통원 치료	진단서·입퇴원(통원) 확인서 ※ 진단명, 일자 등 기재 필수	(상황별) 주의사항 및 필요서류안내 <table><tr><td>골절</td><td>골절 확인에 한함(의증 제외)</td></tr><tr><td>통원</td><td>정액통원(암/재해/특정장병)은 FAX 접수, 복사본 가능</td></tr><tr><td>치아치료</td><td>치아번호, 치료종류, 진단확정일 및 치료 종료일 기재 필수(진료기록사본 첨부필요)</td></tr></table>		골절	골절 확인에 한함(의증 제외)	통원	정액통원(암/재해/특정장병)은 FAX 접수, 복사본 가능	치아치료	치아번호, 치료종류, 진단확정일 및 치료 종료일 기재 필수(진료기록사본 첨부필요)						
		골절	골절 확인에 한함(의증 제외)												
통원	정액통원(암/재해/특정장병)은 FAX 접수, 복사본 가능														
치아치료	치아번호, 치료종류, 진단확정일 및 치료 종료일 기재 필수(진료기록사본 첨부필요)														
진단	진단서, 진단사실 확인서류	진단사실 확인서류 <table><tr><td>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td><td>조직검사결과지</td></tr><tr><td>백혈병 등 혈액암</td><td>골수검사결과지</td></tr><tr><td>간/폐/췌장암</td><td>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td></tr><tr><td>*유방암, Stage CI 진단 (*22.4.1일 이후 가입상품에 한함)</td><td>암 병기 명시된 서류(진단서/소견서)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별첨) ※ 표기 방식: 종양병기/개별 T,N,M(예: 47I/T3N2M1), TNM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td></tr><tr><td>뇌졸중</td><td>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td></tr><tr><td>심근경색</td><td>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td></tr></table> ※ 경도인지장애·최경증이상치매보장특약[돌봄로봇제공형]: 보험 보장 유형 선택 확인서(회사양식)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조직검사결과지	백혈병 등 혈액암	골수검사결과지	간/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유방암, Stage CI 진단 (*22.4.1일 이후 가입상품에 한함)	암 병기 명시된 서류(진단서/소견서)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별첨) ※ 표기 방식: 종양병기/개별 T,N,M(예: 47I/T3N2M1), TNM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	뇌졸중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암, 제자리암, 경계성종양	조직검사결과지												
백혈병 등 혈액암	골수검사결과지														
간/폐/췌장암	방사선 판독결과지(조직검사를 못할 경우)														
*유방암, Stage CI 진단 (*22.4.1일 이후 가입상품에 한함)	암 병기 명시된 서류(진단서/소견서) 또는 회사양식의 암 병기 확인서(별첨) ※ 표기 방식: 종양병기/개별 T,N,M(예: 47I/T3N2M1), TNM병기 분류 불가시 대체병기 기재														
뇌졸중	CT, MRI 등 방사선 판독결과지														
심근경색	각종 검사결과지(관상동맥조영술결과지, 심전도결과지, 심근효소검사결과지 등)														
해외	- 기본 제출서류는 국내와 동일 - 환자의 인적사항, 진단명, 발행 의료기관 및 발행인의 인적사항, 의료기관의 직인 혹은 주치의의 서명 날인된 원본진단서만 인정 ※ 고객님을 위한 신속한 심사를 하기 위해 가급적 영문(또는 중문, 일문)으로 발급된 진단서를 제출해주시기 바랍니다.														
실손의료비 보상															
입원		서류 간소화대상													
외래	진단서, 진료비계산서(영수증), 진료비세부내역서	실손입원	청구금액 50만원 이하 시 병명이 기재된 입퇴원확인서로 진단서 대체 가능												
		실손통원(외래,처방)	FAX접수 및 복사본 가능												
	처방	진단서, 약제비 계산서영수증	17.4.1이전 계약	진료비세부내역서 생략가능 ※ 다음의 경우 진료비세부내역서 제출 ① 비급여 5만원 이상 청구시 ② 타사 실손계약 17.4.1 이후 가입자											
		*본인부담금 10만 이하	보험금청구서에 병명만 기재(진단서 대체) ※ 본인부담금 10만 초과시 병명확인서류(통원일자 및 병명 포함) 필요 (단, 응급의학과·치과·한방과 진료 청구 건 제외)												
*본인부담금: 외래, 처방 합산 / 동일상병 기준, 다수 건일 경우 일자별/진료과별 구분하여 제출 필요															

※ 진단서 대체 가능한 서류는 세부내용 항목을 확인하시기 바라며, 청구내용에 따라 추가서류를 요청할 수 있습니다.
 ※ 자세한 내용은 삼성생명 홈페이지(<http://www.samsunglife.com>)를 통해 확인하실 수 있으며, 재해입증서류 등 문의사항은 사고보험금 전용 콜센터(☎1577-4118)를 이용하시면 전문상담사가 신속하게 안내해드립니다.
 ※ 고객플러자내방 가능 시간은 09:00~16:00(단, 현금성 업무는 15:30까지)입니다.